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  
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년 2월 13일 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5년 2월 17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31회 영등포구의회(임시회) 제1차위원회(1995년 3월 15일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정비국장 손세용)

가. 제안이유

- 도로교통법령의 규정과 실제운영상의 차이를 시조례를 개정한 후 자치구 조례를 개정함
- 견인료 수입이 시에서 구수입으로 전환
- 노상주차장 수입이 시수입에서 구수입으로 조치
- 특별회계 세입증대로 구단위 주차장 건설 및 확충기능 강화

나. 주요골자

- 세입추가
  -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
  - 견인수수료 수입
- 세출추가
  - 견인 대행비용
-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 적립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유재한)

- 현행 견인료를 시수입에서 자치구 수입으로 전환하는 내용
- 도로주차장의 주차료 수입을 자치구 수입으로 전환하므로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설치 재원의 일부가 확보된다고 할수가 있습니다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  
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296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'95. 11. 26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현행 도로교통법령의 규정과 실제운영상의 차이를 시조례(견인관련조례, 교통사업특별회계조례)를 개정한 후 조례준칙에 의거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.
- '95년부터 견인기능이 구청으로 전환됨으로써 현행 견인료 수입의 시수입에서 구청수입으로 전환
-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수입의 시수입에서 구수입으로 조치.
- 자치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증대로 구단위 주차장 건설 및 확충기능 강화.

2. 주요골자

- 세입추가
  -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
  - 견인수수료 수입
- 세출추가
  - 견인대행 비용
- 기금적립
  -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

3. 개정근거

- 주차장법 제8조, 제21조의 2.
- 도로교통법 31조, 31조의 2.
- 서울특별시정차·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4조, 제5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  
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 다음과

같이 개정한다.  
제3조의 “제1호 내지 제9호”를 각각 “제3호 내지 제11호”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.
2. 서울특별시정차·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

제4조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서울특별시정차·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
6.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 | 행 | 개   | 정 | 안   |
|--|---|---|---|---|
| 제3조(세입)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.<br>(신설)                      |   | 제3조(세입)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1.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|
| 1.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|   | 2. 서울특별시정차·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|   | 3. ....   |
| 2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|   | 3. 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4. ....   |
| 3. 서울특별시 보조금   |   | 4. 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5. ....   |
| 4.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5. 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6. ....   |
| 5.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 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              |   | 6. 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7. ....   |
| 6.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7. 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8. ....   |
| 7.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8. 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9. ....   |
| 8.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               |   | 9. 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10. ....  |
| 9. 기타 잡수입  |   | 10. 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11. ....  |
| 제4조(세출)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<br>에는 사용할 수 없다.                   |   | 제4조(세출)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1. ....   |
| 1.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(이하 “공영주차장”이라 한다)의 설치·관리 및 운영비        |   | 1. 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2. ....   |
| 2.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2. 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3. ....   |
| 3.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용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3. 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4. ....   |
| 4. 불법 주·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<br>(신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4. 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5. 서울특별시정차·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 |
|  |   | 5. 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6.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 |
|  |   | 6. 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